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의안 번호	1027
----------	------

제안년월일 : 2019년 9월 5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19년 8월 1일 한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0), 2019년 8월 7일 서윤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2)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9. 9. 5)에 상정하여 각각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종사자 노동조건 개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해 2019년 3월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정하고, 「지방공기업법」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이 분리되어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추가함
(안 제33조제1항제6호에 자목).
- 지방공사 및 공단의 근거법은 「지방공기업법」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근거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명
확히 함(안 제49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56조의2제1항).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사항

제49조제3항제6호 중 “법 제146조” 를 “「지방공기업법」” 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제56조제2항 중 “법 제146조” 를 “「지방공기업법」” 으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 중 “법 제146조” 를 “「지방공기업법」”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3조(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6. 보건복지위원회 가. ~ 아. (생략)</p> <p><신설></p> <p>7. ~ 10. (생략)</p> <p>② (생략)</p> <p>제4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② (생략)</p> <p>③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6.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p> <p>7.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출연법인의 임원</p> <p>④ (생략)</p> <p>제56조(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 ① (생략)</p> <p>② “산하기관장”이라 함은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장으로서 시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p> <p>③ (생략)</p> <p>제56조의2(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 등의 보고) ① 의장은 산하기관장에게 시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임원으로 취업한 경우 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33조(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가. ~ 아. (현행과 같음)</p> <p>자.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사항</p> <p>7. ~ 10.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지방공기업법」-----</p> <p>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임원</p> <p>④ (현행과 같음)</p> <p>제56조(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지방공기업법」-----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6조의2----- ----- ----- 「지방공기업법」----- ----- ----- ----- ----- -----.</p> <p>② (현행과 같음)</p>